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90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16일 금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49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별표(別表) 화물특정임률표(貨物特定賃率表) 중(中) 1928(昭和 3)년 1월 16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1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국선(局線) 내(內) 특정임률(特定賃率)의 부문[部] 마필(馬匹: 종마(種馬) 및 경마회(競馬會) 출장(出場)의 것에 한(限)함)의 항(項)의 기사(記事) 중(中) 제1호(號) 및 제3호(號)를 아래 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- 1 본(本) 임률(賃率)을 적용(適用)한 경우의 운임계산(運賃計算) 최저두수(最低頭數)는 종마(種馬)에 있어서는 5두(頭), 경마회(競馬會) 출장(出場)의 것에 있어서는 10두(頭)로 함.
- 3 본(本) 임률(賃率)에 의한 경우는 화차(貨車) 청소비용(清掃費用) 1차(車)당(當) 일금(一金) 2엔(圓)을 운임(運賃)과 함께 수수(收受)함으로 함.